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1 선고 2015가합13547(본소), 2018가합10136(반소) 판결
[조합정산금 등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197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1 선고 2015가합13547, 2018가합1013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상영, 양재영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한재철, 최영남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440,396,621원과 그 중 433,178,446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190,94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7,234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각 433,178,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반소원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440,996,622원과 그 중 433,778,446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190,94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7,234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피고 B, D는 2005년 12월 동업으로 내과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각 3억 원씩을 출자하여 순천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피고 C도 3억 원을 출자하여 위 동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B, D, C은 2006. 10. 2. 병원 건물이 완공되자 그 신축건물에 'G'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고, 피고 E은 2007년 4월 3.억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추가로 합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9. 30.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자본에 대한 출자비율 : 각 20%

11. 동업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되었을 때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결산하기로 한다.

15. 동업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9. 원장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 전원의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하였고, 2014. 1. 10. 원고에게 위 제명결의를 통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

(1)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제명결의에 따른 2014. 1. 10.

원고의 탈퇴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합재산의 평가방법

(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①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평가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이 영속되는 경우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②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나, 주요 변수(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계속기업가치)에 대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시장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황과 미래수익 창출가능성을 기초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비상장기업의 시장가치는 증권시장을 통해 형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업과 유사한 비교기준 기업으로서 동일 업종 유사 상장기업이나 인수합병 사례기업을 선택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비교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²⁾은 시장가치평가를 우선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대2로 가중산술한 뒤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이 방법은 법령에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과거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어 평가결과의 왜곡가능성이 낮고 검증 가능하여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비하면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영업권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조합재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조합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업가치 평가방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조합재산을 평가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① 조합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 가령 원고와 피고들이 2014. 1. 10.자로 이 사건 병원을 처분하여 각 정산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조합의 유형자산과 영업권이 거래의 객체가 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조합 재산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탈퇴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매년 2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이와 같이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 일반적으로 병원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 외에도 명성,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병원은 개원 이후 약 12년 동안 순천에서 중소규모 내과 전문병원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명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E 자산가치 평가방법에서 영업권3)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한다 하여도 이는 영업권 지속년수를 5년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가액인데,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때로부터 이미 4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이 사건 병원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위 영업권의 평가만으로 조합재산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정산금의 기초가 되는 조합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병원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고 규모가 비슷한 상장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장가치 평가방법은 비교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이 사건에서 택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③ 위 ①항에서 살펴본 원고의 탈퇴 경위,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수익가치 평가방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결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과거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객관적이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탈퇴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병원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이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④ 조합과 비상장법인은 설립절차, 권리능력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결국 조합의 가치도 비상장법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 자산이나 수익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업조합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조합재산의 가치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인의 순자산가치⁴⁾와 순손익가치⁵⁾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⁶⁾은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원칙]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0.6) + (1주당 순자산가치 × 0.4)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0.4) + (1주당 순자산가치 × 0.6)

한편,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⁷⁾을 법정 자본환원율(10%)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이 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환원율 10%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조합의 순손익가치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탈퇴한 2014. 1. 10.을 기준으로 조합의 순손익가치는 17,370,675,5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조합의 순자산가치

1) 순자산(영업권 제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탈퇴한 2014. 1. 10.을 기준으로 조합의 자산총계는 13,662,350,648원, 부채총계는 7,113,699,22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영업권 제외)은 6,548,651,423원(= 13,662,350,648원 -

7,113,699,225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자산항목 중 미수금에 J의 2013년 12월분 임대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위 임대료를 2013. 12. 11.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 부동산 중 이 사건 병원으로 사용하는 순천시 F 지상 건물(이하 '병원 건물'이라 한다)의 시가는 비용지수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비용지수법은 대상건물의 최초 건축비용을 알 수 있을 경우 건축비용에 건축시점과 기준시점의 건축비변동률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대상건물이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경우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으나, 신축된 시점이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건축기술, 원자재 등이 변동될 수 있고 특히 건축경기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점, ② 병원 건물의 착공 및 사용승인 연도는 2006년인 점, ③ 감정인 I은 위 건물과 같이 신축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물에 관하여는 비용지수법이 아니라 간접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보통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최초 감정에서 대상 건물의 구조, 규모, 재료,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이용상태, 경과년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법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건물에 대하여 간접법을 적용한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조합의 순자산에 산입된 K 골프장 회원권 148,000,000원은 3개 기관의 평균시세가 아닌 1개 기관의 시세만으로 평가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위 회원권은 L회원권거래소 사이트에서 2009년 5월경 단 1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이트에서는 조회조차 되지 않는 점, ② 감정인 H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측 회계담당자의 입회 하에 K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정보를 조회하였고, 위와 같이 L회원권거래소의 시세밖에 확인되지 않아 이를 감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달리 위 회원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위 회원권을 순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물분할을 원하나 원고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골프장 회원권 가액을 148,0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인 H의 감정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업권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조합원 중 1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영업권 지속년수를 5년으로 가정함)에 따라 조합재산8)의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이 802,390,6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영업권 지속년수는 원고가 탈퇴한 2014. 1. 10.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 9. 30.까지의 잔여기간인 2년 9개월이므로, 영업권 지속년수를 5년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조합재산의 영업권 평가금액은 이 사건 병원과 M부동산의 영업권을 함께 평가한 것인데,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특징을 고려하면 위 금액 중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탈퇴한 2014. 1. 10.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업 중인 점, ③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중단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앞으로도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권 지속년수를 5년으로 산정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합의 순자산가치 평가액(= 순자산 + 영업권)

따라서 조합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은 총 7,351,042,083원(= 6,548,651,423원 + 802,390,660원)이다.

(4) 정산금의 계산

조합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감정인 I의 감정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조합의 순순익가치는 17,370,675,530원이고 순자산가치는 7,351,042,083원인 사실, 조합의 자산총액이 13,662,350,648원이고 이 중 부동산 자산은 10,845,029,020원이어서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9.37%(= $10,845,029,020 \div 13,662,350,648$, 원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므로, 이에 따라 조합의 총 지분가치를 계산하면 11,358,895,461원(= $(17,370,675,530 \times 2 + 7,351,042,083 \times 3) \div 5$,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 지분(20%)의 가액은 2,271,779,092원(= $11,358,895,461 \times 0.2$, 원 미만 버림)이다.

(5)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건물과 대지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때까지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2014. 1. 10.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합 자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의무와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11. 15. 변호사에게 위 등기이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증거로 첨부된 원고의 2017. 11. 17.자 준비서면이 2017. 11. 20.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2017. 11. 20. 피고들의 위 정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에서 추징세액, 건강검진비, 보험 불입액 등 명목으로 539,065,30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33,178,446원 $\{=(2,271,779,092\text{원}-539,065,305\text{원})\div 4$,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탈퇴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와 피고들의 위 정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2017. 11. 20. 자신의 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갑 제9, 10, 1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명 후에도 조합을 대신하여 2015. 7. 16.부터 2017. 10. 1.까지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4,763,767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제명결의 후에도 조합 재산에 대한 사업자 명의가 남아있는 관계로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 4,108,937원을 초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구상금 및 손해배상으로 각 구하는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6,190,941원(= 24,763,767원÷4,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인 위 2017. 10.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1,027,234원(= 4,108,937원÷4,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초과납부가 종료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0,396,621원(= 433,178,446원 + 6,190,941원 + 1,027,234원)과 그 중 433,178,44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1. 2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190,941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1.부터 위 2018. 2. 21.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27,234원에 대하여는 위 2015. 7. 1.부터 위 2018. 2. 21.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은 그 정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항,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균분하여 등기를 이전받고,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이 등기를 이전받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제6항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들의 위 정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정산금 433,178,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모 판사 박상준 판사 최파라

별지

목 록

1. 순천시 N 대 609.4㎡ 중 1/4 지분

2. 순천시 O 대 574.5㎡ 중 1/5 지분

3. 순천시 N, O 지상

[도로명 주소 순천시 F]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판넬지붕

지하1층, 지상6층 주차장, 소매점, 의원

지하1층 주차장 931.86㎡, 펌프실 14.7㎡, 창고 45.89㎡

1층 소매점 145.21㎡, 의원 867.95㎡

2층 의원 1039.58㎡

3층 의원 489.12㎡

4층 의원 489.12㎡

5층 의원 465.51㎡

6층 의원 652.14㎡ 중 1/4 지분

4. 순천시 P 대 663㎡ 중 1/4 지분

5. 순천시 P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7.40㎡ 중 1/4 지분

6. 순천시 Q 대 631.2㎡ 중 1/5 지분

방법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세 부과 시에 원칙적으로 거래시가를 적용하되, 보충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초과이익금액이 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환원율 10%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4)평가일 현재 평가 대상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잔여재산 분배액을 의미한다.

5)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6)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7)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A \times 3) + (B \times 2) + (C \times 1)\} \div 6$

A: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8)감정인 신문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만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과 M부동산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병원과 M부동산의 영업권을 함께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동의하였다.